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85
------------	------

제출연월일: 2026. 7. 2.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시책 및 지역 내 긴급한 현안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20명”에서 “726명”으로 6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95명”에서 “700명”으로 5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26명”으로 1명 증원(안 제2조)

나.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 2)

1) 별정직 공무원

구 분	6급 상당 이상	7급 상당 이하	→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1) 총 계: 720명 → 726명(증 6명)

2) 일반직: 717명 → 723명(증 6명)

가) 6급 이하: 664명 → 670명(증 6명)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4150호, 2026. 6. 17.)

라. 입법예고: 2026. 6. 17. ~ 6. 22.(5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0명이며”를 “726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95명”을 “70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2% 이내	21.5% 이내	34.5% 이내	30.5% 이내	5.1% 이상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26	-				
정무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723	-				
	3급	1	1				
	4급	7	5	1	1		
	5급	45	25	2	4	2	12
	6급 이하	670	-				
별정직	소계	2	-				
	5급 상당 이상	1	-				
	6급 상당 이하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26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급여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6급 1명(증): 6급 12호봉 기준으로 산정 (67,905,600원)
 - 8급 8명(증): 8급 4호봉 기준으로 산정 (43,973,460원)
 - 9급 3명(감): 9급 1호봉 기준으로 산정 (36,588,680원)
 -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1명(감): 라급 기준으로 산정 (48,005,200원)
-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지출	6급 1명	360,520,100	67,905,600	69,942,800	72,041,000	74,202,300	76,428,400
	8급 8명	1,867,664,800	351,764,000	362,341,600	373,211,200	384,408,000	395,940,000
	소계(a)	2,228,184,900	419,669,600	432,284,400	445,252,200	458,610,300	472,368,400
수입	9급 3명	582,762,700	109,766,000	113,059,000	116,450,800	119,944,300	123,542,600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1명	254,866,140	48,005,200	49,445,360	50,928,720	52,456,580	54,030,280
	소계(b)	837,628,840	157,771,200	162,504,360	167,379,520	172,400,880	177,572,880
총비용(a-b)		1,390,556,060	261,898,400	269,780,040	277,872,680	286,209,420	294,795,520

II.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1,390,556	261,898	269,780	277,873	286,209	294,796
국 비							
구 비		1,390,556	261,898	269,780	277,873	286,209	294,796

III. 기타사항

1. 부대의견: 해당없음
2. 협의사항: 인건비 반영 예산담당 협의
3. 작 성 자: 기획예산실 행정6급 손미영(052-290-306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국 비						
시 비						
구 비	261,898	269,780	277,873	286,209	294,796	1,390,556
합 계	261,898	269,780	277,873	286,209	294,796	1,390,556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2026년도 인건비로 충당(예산담당 협의)

5.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6급 손미영(052-290-3062)